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7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중소기업 안전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진성준의원 안)	2

I. 개요

1.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9.

(3) 회 부 일 : 2025. 7.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되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안전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진성준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중소기업 안전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 28조의5 신설) ○ 공제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가상각 특례 대상 안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 특례내용: 안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 확정 시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 허용 ○ 적용기한: 2026.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안전시설부터 적용

* 진성준의원안 2025. 7. 9. 발의(의안번호 11370)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따른 소방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 안전시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속상각을 허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확충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투자 초기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루고 투자 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초기 세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기업의 투자 집행 효과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가속상각제도를 안전시설 투자에 대하여 허용할 경우 안전시설 투자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당연도 손금 증가를 통한 법인세 감소로 상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영세사업장 내 안전시설의 조기 확충을 도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구축하였으나 부족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함’으로 답한 비율이 11.3%로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제일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억)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다음으로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가 제시된 바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손금산업 특례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감가상각비 손금산업 특례가 도입되더라도 이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를 이연하는 효과만 있으므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감가상각 손금산업 특례에 따라 시설의 신고내용연수 기간을 줄이는 가속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나, 그 다음 과세기간의 감가상각액이 감소함에 따라 손금액도 감소하여 다음기의 법인세 부담은 늘어나게 됨.

즉,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따른 가속상각제도는 전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이미 예정된 투자를 조기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둘째, 현행법상 산업재해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시설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음.

셋째,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²⁾을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을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³⁾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통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영리 목적 기업 외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업종 제한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문 의 처

02)6788-5154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